

인천지방법원 2020. 3. 31 선고 2019가단120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김용진

변론 종결2020. 3. 24.

판결 선고2020. 3. 31.

주 문

1. 2019. 5. 17. 19:3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3 길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버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04,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나. 원고가 2019. 3. 17. 19:38경 인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길병원 사거리 직전에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과 인도 사이의 도로로 주행하다 원고 차량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2020. 2. 17.까지 피고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804,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교통사고의 발생에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 행동이 개재되었을 때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버스가 우회전 차로에 진입했을 때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버스 오른쪽으로 끼어들어 황색 실선과 인도 사이의 공간을 주행하다 원고 버스가 우회전하기 위해 방향을 틀기 시작한 시점에 버스 옆면과 충격하여 넘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 오토바이가 주행하던 황색 실선과 인도 사이의 공간은 길가장자리구역으로서 통행하여서는 안 되는 곳이고(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 우회전 차로로서 굴곡이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버스 운전자에게 피고 오토바이가 황색 실선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에 끼어들어 앞지르기를 시도할 것을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오토바이가 인도와 원고 버스 사이의 좁은 공간을 끼어들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원고 버스 운전자가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는 원고 버스가 정차해 있던 선행 버스 때문에無理하게 우회전하여 오른쪽에 인도와의 공간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 버스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우회전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25조)에 비추어 볼 때 인도와의 사이에 공간을 여유 있게 두지 않고 우회전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4,804,07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020. 2. 18.자) 송달 다음날인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림